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12.1조)

-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서비스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
  - ※ 도박서비스 관련 예외는 부속서한에 명시
  - ※ 금융서비스 및 정부조달은 별도 chapter에서 논의

###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제12.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제12.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 MA) 제한 조치 도입 금지(제12.4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제12.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상기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보목록에 명시

※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상기 4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됨 (Negative 방식).

**참고: 유보의 종류**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②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국내규제」조항에 의거,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할 수 있음

### 국내규제 (제12.7조)

- 서비스공급과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부속서Ⅱ 유보사항은 제외)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 투명성 (제12.8조)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합리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 자격상호인정 (제12.9조)

- 특정 국가 또는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는 이와 같은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와 자격 상호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의 의무를 규정

###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12.10조)

-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허용

※ 송금이나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 :

-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제12.11조)

- ① 협정당사국과 정상적 경제관계(normal economic relations)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제3국인이 소유하는 타당사국 기업, 또는
-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전문직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부속서12-가)

- 인정(Recognition) 조항 관련 부속 문서(부속서 12-가)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논의를 추진 하기로 합의
  - ※ 동 작업반은 협정 발효후 2년 이내에 MRA 논의 추진현황을 한·미 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할 의무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獸醫) 등 3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 ※ 양측 합의시 협의분야 추가 가능

## 유보목록의 작성 범위 (지방정부 조치 문제)

- 미국의 주정부 비합치 조치는 현재유보로 기재되어 자유화 후퇴 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이 적용됨.

※ 다만, 미국 측의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 모든 주정부 비합치 조치를 나열하는 대신 예시적 목록만 첨부

- 국내 서비스공급자 또는 투자자의 미국 진출시 특정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동 조치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의 적절성 판단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별도 부속서로 규정(부속서 12-다)

※ 동 협의채널은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비서비스 분야(광업·제조업·농수산업)주정부 비합치 조치에도 적용

- 한편, 우리의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및 미국의 기초 지자체(county 수준)의 현존 비합치 조치에 대해서는 4대 일반적 의무(NT, MFN, MA, LP)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상호 허용(제12.6조 비합치 조치)

### 특송서비스(Express Delivery Service) (부속서 12-나, 부속서한)

- 현행 시장 개방 수준 유지, 우정당국의 독점 지위 남용 금지, 교차지원 금지 노력 등 규정
  - 우편당국의 배타적 권리(서신독점, 망접근 제한 등)를 보장하되, 국제특급배달의 경우 민간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서류(international document)까지 확대
    - ※ 교차지원 : 독점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을 특급배달서비스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것을 의미
- 이와는 별도로 서신의 정의를 중량, 가격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독점범위를 완화해가고, 우편서비스 규제체계 독립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 유보목록 개요 (부속서 I, II)

- 서비스 교역확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직 서비스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방 추진
  - ※ 우리측 유보 개수 : 총 91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 ※ 미측 유보 개수 : 총 18개 (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

## 투자 관련 주요 유보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NT) 및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PR)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
    - ※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유보 적용 제외

##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회계·세무)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일부 국제공법 및 미국 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회계사·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무 서비스는 3단계, 회계·세무 서비스는 2단계로 단계적 개방 추진

### 참고: 전문직 서비스 단계적 개방 주요 내용

#### < 법률 >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일부 국제공법 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09. 9. 26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을 통해 1단계 개방 제도화)
- 2단계(발효후 2년내):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제휴 허용 ('11. 4. 30.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통해 2단계 개방 제도화)
- 3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 < 회계 >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 공급 허용, 미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의 출자 허용

#### < 세무 >

- 1단계(발효시) : 미국 또는 국제 세제(세법)에 대한 자문 허용, 미국의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5년내):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미국 세무사의 출자 허용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ystem Operator, 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 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rogram Provider: PP)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 약속

**참고: 방송서비스 개방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지분 〉

- PP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 유지
-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 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 (발효후 3년내)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

〈 방송쿼터 〉

-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 완화
  - 애니메이션 부문 : (현행) 35% → (발효시) 30%
  - 영화 부문 : (현행) 25% → (발효시) 20%
  - ※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방송쿼터는 현행 유지
- 1개국 쿼터 : (현행) 60% → (발효시) 80%
  - ※ 1개국 쿼터 :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 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에도 적용됨



■ 아래의 방송 서비스 관련 사항은 미래 유보함.

- ① 미디어간 교차소유 제한, ②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 설정, ③ 이사회 구성원들의 국적 또는 거주 제한, ④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방송 비율 설정, ⑤ 외주제작 콘텐츠 쿼터 부과, ⑥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요건, ⑦ 주시청시간대(prime time) 쿼터 부과, ⑧ VOD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콘텐츠 보유 비율 설정, ⑨ 특정 분야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 제한·금지 조치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

-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협정발효 후 2년내)

※ 단,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와 SKT는 제외

-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간접투자를 허용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현재 규제 체계에 대해 논의중인 통신·방송 융합 관련 가입자 기반 비디오 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예: IPTV)에 대해서는 미래유보

※ 당해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

- 다만, 추후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수준은 현행 기간통신 또는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수준을 보장하고, 콘텐츠 규제수준도 현행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쿼터 수준을 보장

■ 디지털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참고: 디지털시청각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타입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및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단,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II」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

####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함(미래유보)
-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① 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으며,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이를 인쇄·배포할 수 있음

####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의료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설치 등 사항은 포괄유보에서 제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및 산업환경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규제수준 유지(현재유보)

#### ■ 육상운송 (여객·화물운송)

- 육상 여객운송(시내·시의 노선버스 및 택시) 및 화물운송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여객운송의 경우,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 개방된 통근·통학버스, 공항버스, 전세 버스, 궤도·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 ■ 부동산 서비스

-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개발·공급·관리·판매·임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도 채택, 유지할 권리 유보
  -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등 “전문직 분야의 개방”이란, 외국인들도 국내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 해운서비스·어업 시장 개방문제

- 해운의 경우, 미국은 국제해운시장 분야를, 우리 나라는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함.
  - ※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련 부수 서비스(항만내 선박하역·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시장접근을 허용
-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

- 양국은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EEZ내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각 당사국의 정책, ② 관심 사안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협력, ③ 세계 수산 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 (부속서22-다)

## 참고 한·미 FTA상 한국의 서비스 유보목록 개요

〈 Annex I (현재유보) : 47개 〉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S	건설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S	건설기계 서비스	LP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3	S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검사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4	S	담배·주류 도소매	MA LP	1) 사무소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5	I	농축산물	NT	1) 쌀 및 보리 재배·투자 금지 2) 육우 사육에 대한 투자제한 명시(50%)
6	S	안경사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7	S	도소매 유통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한약재 수급조절 권한 명시
8	S	의약품 소매(약국)	MA LP	1) 유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2) 1개 업소 설치 요건
9	S	철도운송	MA	사업자 수 제한 요건 명시
10	S	도로 여객 운송 (택시·노선 버스 제외)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1	S	해운 서비스 (국제화물운송, 도선업, 선박투자회사)	NT MA LP	1) 도선업의 적용중인 NT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3) 설립형태 제한 명시(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
12	I	항공운송	NT SMBD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에 국적제한 명시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3	S,I	항공운송(특수항공)	NT SMBD LP	1)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49%) 2) 이사회의 국적제한 명시 3)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4	S	도로운송 서비스 (주차장, 견인 등)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5	S	쿠리어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 사업자 수 제한 명시
16	S,I	통신 서비스	NT MA LP	1)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2) KT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 3)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 명시 4)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7	S	부동산(중개-감평)	LP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18	S	의료기기 소매· 리스·임대·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19	S	자동차 임대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0	S,I	해양조사 및 지도제작	NT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절차 요건 명시
21	S	법률서비스	MA LP	1) 사업자 자격,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요건 명시
22	S	노무사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3	S	변리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4	S	회계·감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5	S	세무사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6	S	통관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및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7	S	산업보건·안전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8	S	엔지니어링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9	S,I	옥외광고물·전광판	PR SMBD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2) 회사 임원 및 프로그램 편성자의 국적 요건 3) 프로그램의 30%를 (국산) 공공 광고 편성 의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30	S,I	인력 배치·선원 배치 서비스	NT MA LP	1) 사업자 수 제한 명시 2)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 한국해양수산원에 의한 선원 교육 독점 규정
31	S	경비 서비스	MA LP	1)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32	S	간행물 유통	NT	1) 국내 배포 목적의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제 명시 2) 필요시 사후 심의 대상이 됨을 명시
33	S	항공기 정비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4	S,I	고등교육	NT MA SMBD	1) 이사회 국적 제한 명시 2) 사업 형태 제한 명시 * 반드시 비영리재단 형태로 사업 영위
35	S,I	성인교육	NT MA	1) 외국인이 영위 가능한 학원의 형태 및 종류 명시 (성인 대상, 학위 수여 금지) 2) 외국인 강사는 반드시 대졸 이상이어야 함
36	S	직업 훈련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7	S	수의 및 수산질병관리사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8	S	환경 서비스	LP	사무실 구비 요건 명시
39	S	공연 서비스	NT	외국인 또는 외국인 초청 공연에 대한 사전 추천제 명시
40	S,I	뉴스통신 서비스	NT SMBD MA LP	1) 외국통신사는 국내통신사를 경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 2) 뉴스통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25%) 3) 기사 취재 목적의 지사 및 지국 설립만 허용 4) 뉴스통신사 대표자·편집인, 연합 뉴스사·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에 적용되는 국적제한 명시
41	I	생물학적 제재 제조	PR	적십자사가 원료물질의 독점공급자임을 명시
42	S,I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SMBD MA LP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 적용 되는 국적 요건 (한국인만 가능) 2) 정기간행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50%) 3) 미국 본사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인쇄·배포 가능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43	S,I	농축산물 유통	NT MA	1) 육류 도매업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50%) 2) "가축시장"은 농협 등에서만 개설할 수 있음 3) "공용도매시장"은 지자체에서 개설함을 명시 4) 서비스 chapter의 NT, MA 관련 규정은 WTO TRQ 이행을 위한 국내 제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
44	S,I	방송 서비스	NT PR SMBD MA LP	1) 방송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2)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명시 3)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적요건 명시 4) PP의 간접 투자 제한 완화 약속 명시 5) 1개국 쿼터 관련 제한 완화 약속 명시
45	I	에너지(전력)	NT	1)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명시(40%) 2)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외국인은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음을 명시 3) 전력의 송·배전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 제한 명시(50%)
46	I	에너지(가스)	NT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명시 (30%)
47	S,I	스크린 쿼터	PR MA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 < Annex II (미래유보) : 44개 >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1	I	외국인 투자	NT PR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 도입 권한 유보
2	I, S,I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의 민간 이양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NT 보장
3	I	외국인토지	NT	포괄적 유보
4	S,I	총포·도검 및 화약류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5	S,I	취약집단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 등 사회적 약자)	NT MFN PR SMBD LP	포괄적 유보
6	S,I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NT LP PR SMBD	포괄적 유보 (* 다만, 금융 분야는 적용 제외)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7	S, I	사회 서비스	NT MFN LP PR SMBD	포괄적 유보
8	S	MA 포괄유보	MA	UR GATS 양허표를 기초로, 금번 KORUS FTA협상을 통해 신규 양허한 분야를 제외 하고는 MA의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유보
9	S, I	MFN 포괄 유보	MFN	1) KORUS 발효 전 협정은 MFN 적용 제외 2) KORUS 발효 후 협정에 MFN을 부여 * 단, 항공·해운·수산 분야는 MFN 제공 대상에서 제외
10	S, I	방송 서비스	MFN	위성방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1	S, I	방송 서비스	MFN	철도운송 서비스 관련, MFN 포괄 유보
12	S, I	환경 서비스 (음용수, 생활폐수, 자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적 유보 * 단, 법령상 일부 인정되는 私人間 계약은 인정
13	S, I	원자력 에너지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14	S, I	에너지 (전력)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한전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5	S, I	에너지 (가스)	NT PR SMBD LP	포괄적 유보 * 단, 부속서 1에 규정된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은 제외
16	S, I	농축산물(인삼, 쌀, 홍삼)	NT PR LP	중개, 도매, 소매 포괄 유보
17	S, I	육상 여객운송(택시 및 정기 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8	S, I	육상 화물운송 (쿠리어 제외)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19	S, I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20	S, I	쌀의 저장 및 보관	NT	포괄 유보
21	S, I	우정사업 (비독점 영역)	NT	우정사업본부가 누리는 혜택 (공익 활용, 차량 대수 임의증가 권한)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22	S,I	방송서비스	NT PR SMBD MA LP	다음 사항에 대해 포괄 유보 1) 매체간 교차 소유 2) 외국인외제 조항의 강화 권한(PP는 제외) 3) 이사의 국적 제한 4) 만화총량제 5) 외주제작 쿼터 등 다양한 새로운 쿼터 제도의 도입을 위한 권한 6) 방송법에 의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공 사업에게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7) 외국방송 재송신에 관한 사항 *재송신 제도를 폐지코자 할 경우 기존의 PP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필요
23	S,I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NT PR SMBD MA LP	포괄 유보 * 방송으로 분류되건 통신으로 분류되건, 해당 분야에 적용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수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명시
24	S,I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MFN PR	포괄 유보
25	S,I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국산 영상물 인정 기준)	NT PR	포괄 유보
26	S,I	부동산 서비스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 유보
27	S,I	자금 불능 및 구조조정 (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 유보
28	S,I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 국산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질 경우,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조치 가능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도입 가능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

번호	구분	유보 분야	대상 의무	내 용
29	S,I	지적재산권 및 관련 지도제작	NT	포괄 유보
30	S,I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등급판정	NT LP	포괄 유보
31	S,I	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 유보 * 인공수정, 유전적 개량, 벼 및 보리의 도정, 미국 종합 처리장 관련 활동 등
32	I	어업	NT	포괄 유보
33	S,I	신문 발행 및 배포	NT SMBD LP	포괄 유보
34	S,I	교육 서비스 (유아, 초-중등, 고등,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35	S,I	보건의료 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 기관 설치 등의 사항은 예외
36	S,I	영화의 진흥(promotion),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 유보
37	S,I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 유보
38	I	농어촌 관광	NT	포괄 유보
39	S,I	법률-외국법 자문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0	S,I	회계-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1	S,I	세무-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별 개방 계획 명시
42	S	전략물자	NT LP	포괄 유보
43	I	정부권한 행사 서비스	NT PR SMBD	포괄 유보
44	S,I	해운-cabotage, 해상 여객 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 유보

※ S:서비스, I:투자, NT:내국민대우, MFN:최혜국대우, PR:이행요건, SMBD: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MA:시장접근, LP:현지주재